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공간운영세칙

[총학생회 세칙 제6호] [제정 2014.11.24, 공포 2014.11.27]

제 정 2014 · 11 · 24 <제 정>

제1장 총칙	1
제2장 자치공간	
제1절 배정공간	1
제2절 대여공간	2
제3절 야외공간	3
제3장 공간운영위원회	
제1절 공간운영위원회	4
제2절 공간협의회	5
제4장 공간운영규칙	6
부 칙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모든 공간을 배정·조정·유지·관리하는데 있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간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제고 및 공간 사용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공간’ 이라 함은 본회 회원들이 자치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학내 모든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된다.
 1. ‘배정공간’ 이라 함은 각 단위가 학교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기존에 배정받았던 공간이다.
 2. ‘대여공간’ 이라 함은 각 단위가 공간운영위원회에 대여신청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대운동장·오바마홀·무용실이 이에 해당된다.
 3. ‘야외공간’ 이라 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실내 공간을 제외한 공간으로 국제학사 앞·나무계단·잔디광장·인문과학관 앞·붉은광장·사이버관 나무계단·본관중앙광장·교수학습개발원 앞 잔디밭·사회과학관 옆 정자가 이에 해당된다.
- ② ‘공간배정’ 이라 함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각 단위에 학생자치활동을 목적으로 공간의 사용을 허가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공간조정’ 이라 함은 당초 배정된 공간이 사용주체 및 공간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또는 공간 내부의 상당부분이 시설공사를 통하여 구획 및 형태(마감재 변경)등이 변경됨을 말한다.

제2장 자치공간

제1절 배정공간

제3조(배정공간관리 원칙)

- ① 총학생회,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동아리연합회 등 모든 단위는 배정받은 공간을 임의로 조정·변경·교환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본 세칙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② 총학생회,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동아리연합회 등 모든 단위는 배정받은 공간을 그 목적성에 맞추어 청결하게 사용할 의무를 진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동은 제8조(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따른다.

제4조(배정공간의 조정 절차)

- ① 공간 조정을 필요로 하는 단위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양식을 갖추어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성·타당성·적정성 등을 심의한 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이 부결되었을 경우 해당 단위는 2회에 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은 그 즉시 재논의를 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신·증축으로 인하여 새롭게 공간이 생길 경우 본회는 자치공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배정·조정한다.

제5조(배정공간의 유지 및 관리)

- ① 배정공간의 유지 및 관리는 해당 배정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단위의 모든 구성원이 한다.
- ② 배정공간책임자는 공간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간운영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배정공간책임자)

- ① 배정공간책임자는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단위의 대표자로 한다.
- ② 배정공간을 이용하는 단위의 대표자가 궐위될 경우 해당 단위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인이 배정공간책임자가 된다.

제7조(행위제한)

배정공간사용 단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간의 명칭 및 용도의 무단 변경
2. 공간의 무단 분할·합병 및 이전 등
3. 위험물의 제작·사용 및 보관
4. 시설물 구조에 무리를 가하는 진동·충격 등의 실험실습 및 행위
5. 기준 적재하중 이상의 물품의 실내반입 및 적재
6.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 지나친 음주, 소음발생 및 기타 문란한 행위
7. 시설물 파손
8. 기타 공간사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

제8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 ① 제3조(배정공간관리 원칙) 제1항 및 제2항, 제7조(행위제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간운영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시정명령을 받은 단위는 시정사항을 그 즉시 시정하고 총학생회 게시판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연도 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공간을 회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특정 공간의 회수가 결정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즉시 해당 공간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공간정보(호수, 공간명 등)
 2. 공간회수사유
 3. 공간회수일자
 4. 공간회수기간(일시적 또는 영구적)

제2절 대여공간

제9조(대여 신청)

대여공간은 사용하고자 하는 단위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양식을 갖추어 공간운영위원회에 대여를 신청한 후 배정받아 사용한다.

제10조(대여공간관리 원칙)

- ① 총학생회,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동아리연합회 등 모든 단위는 대여한 공간을 임의로 조정·변경·교환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본 세칙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② 총학생회,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동아리연합회 등 모든 단위는 대여한 공간을 그 목적성에 맞추어 청결하게 사용할 의무를 진다.
-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의하여 징계한다.

제11조(공간대여의 절차)

- ① 대여공간을 대여하고자 하는 단위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양식을 갖추어 공간운영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공간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공간운영위원회는 의뢰받은 사항에 맞게 대여공간을 각 단위에 배정한다. 단,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을 한 각 단위의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진행하여 결정한다.

제12조(대여공간의 유지 및 관리)

- ① 대여공간의 유지 및 관리는 공간운영위원회가 한다.
- ② 공간대여자는 공간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간운영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수칙)

대여공간사용 단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업 및 교육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것
2. 이용시간을 엄수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
3. 각 공간에 적합한 해당 복장을 갖추어 갈 것
4.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
5. 공간 내에서 문란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6. 공간 이용 후 정리정돈과 청결을 항상 유지할 것
7. 고성방가 등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8. 기타 공간사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9. 기타 대여공간 개별 이용수칙

제14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 ① 제10조(대여공간관리 원칙) 제1항 및 제2항, 제13조(이용수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간운영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시정명령을 받은 단위는 시정사항을 그 즉시 시정하고 총학생회 게시판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연도 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대여자격을 제한한다.

제3절 야외공간

제15조(야외공간관리 원칙)

본회 모든 회원은 야외공간을 그 목적성에 맞추어 청결하게 사용할 의무를 진다.

제16조(야외공간의 대여)

- ① 야외공간을 행사·사업·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위 또는 정회원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양식을 갖추어 사용하고자 하는 희망일 7일 이전에 공간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공간운영위원회는 야외공간 대여 요청이 있을 경우 선착순으로 그 공간을 배정한다.

제17조(이용수칙)

야외공간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지저분한 공간사용
- 2. 위험물의 제작·사용 및 보관
- 3. 야외공간에 무리를 가하는 진동·충격 등의 실험실습 및 행위
- 4. 흡연, 지나친 음주, 소음발생 및 기타 문란한 행위
- 5. 시설물 파손
- 6. 기타 공간사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

제18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 ① 본 세칙 제17조(이용수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간운영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시정명령을 받은 단위 또는 정회원은 시정사항을 그 즉시 시정하고 총학생회 게시판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연도 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대여자격을 제한 한다.

제3장 공간운영위원회

제1절 공간운영위원회

제19조(지위)

본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특별기구의 지위를 갖는다.

제20조(목적)

공간운영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구성원들의 자치공간 이용을 보장하고 원활한 사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회원)

본회 회원은 모든 정회원으로 한다.

제22조(구성)

- ① 운영위원은 6인으로 하며 본회 정회원 중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 단과대학·독립학부 또는 동일 동아리 소속의 운영위원이 3인 이상일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6인 중 내부 선출을 통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제23조(업무)

- ① 본회 회원을 위하여 모든 자치공간을 조정 및 관리한다.
- ② 공간운영위원회는 대여공간·야외공간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대여신청을 받고 신청단위에 배정한다.
- ③ 본회 회원의 원활한 자치공간 사용을 위하여 본 세칙에 따라 자치공간 사용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관리 및 집행한다.
- ④ 공간운영위원회는 매달 공간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24조(소집)

- ① 공간운영위원회는 매주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공간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 24시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의 및 의결)

- ① 공간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공간운영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6조(권한)

- ① 공간운영위원회는 대여공간·야외공간 사용 시간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회원에게 배분한다.
- ② 공간운영위원회는 공간운영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치공간 관리 전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③ 공간운영위원회는 제7조(행위제한), 제13조(이용수칙), 제17조(이용수칙)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7조(공간운영실태조사)

- ① 공간운영위원회는 자치공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공간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② 공간운영위원회는 매달 실시한 공간운영실태조사 보고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그 밖의 공간운영실태조사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공간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2절 공간협의회

제28조(목적)

대여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대여공간 배정에 있어서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소집)

- ① 공간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11조(공간대여의 절차) 제1항의 제출서류를 제출한 단위 중 같은 시간, 같은 대여공간에 중복된 단위가 있을 경우 해당 담당자를 구두 및 서면으로 소집한다.
- ② 공간협의회는 중복되지 않은 단위의 공간 배정이 모두 끝난 후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0조(개의 및 의결)

- ① 공간협의회는 신청한 단위 중 같은 시간, 같은 대여공간에 중복된 단위가 있을 경우 해

당 담당자들과 공간운영위원장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공간협의회는 해당 담당자들의 충분한 협상과 논의를 통하여 공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장 공간운영규칙

제31조(공간운영규칙)

공간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공간운영규칙」이라 한다.

제32조(발의·의결 요건)

① 각 「공간운영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된다.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2. 공간운영위원장의 발의

② 각 공간운영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본 세칙은 공포 후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